[별표 13]

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가공의 용어 정의

가. 단순절단은 뿔 등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톱, 칼 등에 의하여 단순히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.

나. 1차 가공은 단순절단에 이어 뿔 등의 외피 등이 절단 및 연마에 의하여 외피가 제거되도록 가공되었으나 왁스 등을 이용하여 광택이 나도록 연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.

다. 완전가공(연마)은 본래 사용할 제품의 모양으로 광택이 나도록 연마·가공되어 더 이상 가공이 필요 없는 제품과, 가공과정이 완전히 끝나 에나멜 도포 또는 도색이 완료된 제품을 말한다.

2. 검역방법

가. 완전가공(연마) 제품은 지정검역물에서 제외

나. 1차 가공제품

1)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은 수출국검역증명서 및 현물 확인 후 검역실시(자연상태의 뿔 등 포함)

2) 우제류동물의 수입금지지역산은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증명하고 현물검사 결과 건조된 뿔의 경우 포르말린 소독실시 후 개방

3) BSE 관련 품목으로 수입금지지역산은 수입금지